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방법,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요건·분담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운행방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선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광역철도 운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안 제9조의7 신설)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할 세부내용에 광역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

나.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요건 등(안 제14조의3 신설)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을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정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 등(안 제18조 신설)

교통수단 접근성·이동성·연결성 등을 조사·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전년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등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 마련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행 도중 열차를 갈아타는 환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환승(평면환승)이 이루어질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승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교통수단 상호 간의 효율적인 연계 이용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이동경로 정보, 교통수단의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의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의10제7항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은 대도시권 내

교통축에 포함된 주요 도로, 주요 철도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6호”를 “법 제8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재정 지원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 운송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2. 교통수단의 이동성
 3.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연결성
 4.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혼잡성
 5. 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평가 기간 및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7, 제14조의3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4조(광역철도) ① ----- ----- ----- ----- ----- ----- ----- ----- ----- ----- ----- ----- ----- -----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단서 신설>	1. ----- ----- ----- ----- ----- ----- ----- ----- ----- ----- ----- ----- ----- ----- ----- 다만, 운행 <u>도중 열차를 갈아타는 환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환승(평면환승)이 이루어질 것</u>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신설>

3. -----

----- . 다만, 환승이 필요
한 경우에는 환승시간을 포함
하여 계산한다.

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
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2.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의 목
표 및 추진방향
3.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의 시
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
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교통수단 상호 간
의 효율적인 연계 이용을 위
하여 이용객에게 이동경로 정
보, 교통수단의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
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
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
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
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
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의
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
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의10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
이 완료된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
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
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의10제7항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은 대도
시권 내 교통축에 포함된 주요
도로, 주요 철도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축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광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7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재정 지원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 운송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

<신 설>

한다.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2. 교통수단의 이동성
3.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연결성
4.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혼잡성
5. 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u>제18조</u> · <u>제19조</u> (생략)	<u>우에는 조사·평가 기간 및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u> <u>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9조</u> · <u>제20조</u>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	--